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HPD) 및   
뉴욕시 주택개발공사(HDC)

**주택 신청자를 위한 여성 폭력 방지법(VAWA)에 따른 권리 통지[[1]](#footnote-1)**

연방 여성 폭력 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은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VAWA 보호는 여성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성별, 성별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2]](#footnote-2) 이 통지서는 VAWA에 따른 신청인의 권리와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HPD) 및 뉴욕시 주택개발공사(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 HDC)('당국'으로 통칭), 그리고 HPD/HDC가 매매하는 주택에 대한 신청 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마케팅 대리인 또는 기타 소유주 대표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신청인 및 세대 보호**

NYC Housing Connect를 통해 매매되는 주택은 다양한 연방, 주 또는 지방 재정 프로그램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 및 귀하와 함께 거주할 사람('세대원')이 다른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면, 귀하 및 세대원이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스토킹의 피해자이거나 과거에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입주를 거부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가구는 세대원이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스토킹의 피해자이거나 과거에 피해자였다는 사실에 따른 불리한 요소를 근거로 거부당할 수 없습니다.

**가정 폭력 생존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VAWA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거부 사유가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 경험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주장하고자 할 경우 주택 신청에 대한 거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에는 신용 불량, 임대료 미납, 불량 임대 기록 및/또는 범죄 기록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청구를 제출할 시 신청인은 증빙 문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에 대한 귀하의 권리 및 이의 제출 기간에 대한 지침은 주택 개발 회사의 마케팅 대리인이 보내는 거부 통지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VAWA 권리를 근거로 하는** 이의 제기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뉴욕시 가정 사법 센터(Family Justice Center) 중 한 곳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Bronx Family Justice Center, 198 East 161st Street, 2nd Floor, 718-508-1220

Brooklyn Family Justice Center, 350 Jay Street, 718-250-5113

Queens Family Justice Center, 126-02 82nd Avenue, 718-575-4545

Manhattan Family Justice Center, 80 Center Street, 212-602-2800

Staten Island Family Justice Center, 126 Stuyvesant Place, 718-697-4300

가정 사법 센터는 가정 폭력 및 성별에 기반한 폭력의 피해자를 위해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로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방문 시 본 통지서의 사본을 지참하십시오.

**기밀 유지**

관련 당국 및 모든 마케팅 대리인/소유주 대표는 VAWA에 따라 신청자가 권리를 행사한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인 신청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공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제한된 시간 동안 정보를 공개하는 데 동의하는 서면 허가를 받은 경우.
* 법률이 당국 또는 마케팅 대리인/소유주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기타 법률**

VAWA는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스토킹 피해자에게 더욱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는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의 생존자인 경우, 다른 연방 법률뿐만 아니라 주 법률 및 지방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주거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HUD의 다양한 주택 프로그램을 다루는 HUD의 VAWA 최종 규정 사본은 www.gpo.gov/fdsys/pkg/FR-2016-11-16/pdf/2016-25888.pdf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폭력적 관계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뉴욕시 가정 폭력 핫라인(NYC Domestic Violence Hotline) 의 1-800-621-4673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친밀한 관계 간의 폭력 생존자를 위한 추가적인 뉴욕시 자원으로는 위의 '신청인 보호' 항목에 열거된 **가정 사법 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과거의 피해로 도움이 필요하신 신청인은 **전국 범죄 피해자 센터의 스토킹 지원 센터(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s Stalking Resource Center)**

웹사이트(**https://victimsofcrime.org/getting-help/**)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성폭력에 반대하는 뉴욕시 연합(NYC Alliance Against Sexual Assault)의**

**212-229-0345번** 또는 **강간 학대 및 근친상간 전국 네트워크(Rape Abuse and Incest National Network, RAINN)의 1-800-656-4673**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을 포함한 모든 범죄 피해자는 해당 지역의 경찰서에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 귀하 또는 다른 개인이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라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귀하의 신청이 거부된 경우의 이의 제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footnote-ref-1)
2. 주택 제공자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가족 상태, 장애 또는 연령과 같은 보호 대상 특성에 근거하여 어느 누구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HUD의 지원 및 보장, 저소득 주거 세액 공제 지원 및 HPD/HDC 융자 지원을 받는 주택은 실제적이거나 인지적인 성적 지향성, 성별 정체성 또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을 갖춘 모든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footnote-ref-2)